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1. 15.

나. 제안자: 마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 11. 18.

○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12. 2. ~ 12. 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19. 12. 9.

라. 상정일자: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19. 12. 10.)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9. 12. 11.)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9. 12. 12.)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19. 12. 13.)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9. 12. 16.)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19. 12. 17.)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2019. 12. 1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나. 제출내역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주요내용

○ 2020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4개 기금, 683억 9,29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03억 3,764만 9천 원이 증가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I 기금운용 계획

(단위: 천 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㉑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 입 ㉓	지 출 ㉔		
<b>합 계</b>	<b>28,055,348</b>	<b>51,043,987</b>	<b>10,706,338</b>	<b>68,392,997</b>	<b>40,337,649</b>
재 난 관 리 기 금	6,394,432	1,170,591	515,420	7,049,603	655,171
남북교류협력기금	370,660	207,680	150,000	428,340	57,680
중소기업육성기금	3,552,272	2,118,687	3,000,420	2,670,539	△881,733
자 활 기 금	1,712,556	87,642	80,800	1,719,398	6,842
노 인 복 지 기 금	1,207,138	127,576	27,420	1,307,294	100,156
양 성 평 등 기 금	2,138,041	40,000	40,000	2,138,041	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46,265	28,495	40,420	834,340	△11,925
재 활 용 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179,203	78,930	251,220	1,006,913	△172,290
마포자원회수시설 관 련 기 금	5,405,025	3,014,315	2,304,098	6,115,242	710,217
옥외광고발전기금	1,204,037	421,000	750,800	874,237	△329,800
도로굴착복구기금	1,372,800	1,126,050	1,103,540	1,395,310	22,510
식 품 진 흥 기 금	2,230,710	384,873	559,870	2,055,713	△174,997
저 소 득 주 민 주 거 안 정 기 금	442,209	1,556,148	1,879,880	118,477	△323,732
공유재산관리기금	0	40,682,000	2,450	40,679,550	40,679,550

※ 수입: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제외)

※ 지출: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제외)

## II 기금별 사업 계획

(단위: 천 원)

기 금 명	주 요 사 업		비 고
재 난 관 리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	도 안 전 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50,000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215,000	
	민간용자금	50,000	
	예치금	7,049,603	
남 북 교 류 협 력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3,500	총 무 과
	평화행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81,500	
	인도적 대북지원	65,000	
	예치금	428,340	
중 소 기 업 육 성금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420	지 경 제 과
	통화금융기관용자금	3,000,000	
	예치금	2,670,539	
자 기 활 금	자활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000	생 활 장 과
	자활근로사업단 전문인력 지원사업	37,400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사업	23,600	
	안전강화·공간개선 사업	11,800	
	자활기업 지원사업	5,000	
	예치금	1,719,398	
노 기 인 복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	노 장 애 인 과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	27,000	
	예치금	1,307,294	
양 성 평 등금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1,400	여 가 족 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31,000	
	여성친화시설 설치	3,600	
	여성친화시설설치 지원	4,000	
	예치금	2,138,041	
환 경 미 화 원 자녀학자금대여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420	청 행 정 과
	학자금 대여	40,000	
	예치금	834,340	
재 활 용 품 관 리금	폐형광등 철제수거함 구매	6,000	청 행 정 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0,0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560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8,000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작업용품 (마스크, 장갑)구매	3,200	

기 금 명	주 요 사 업	비 고	
재활용품 판대대금 관리금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안전화 구매	560	
	차고지 재활용품 분류용 마대 구매	1,800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매	15,000	
	초등학생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비	7,000	
	청소담당자 현장견학 및 워크숍 운영비	6,000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캠페인 운영비	2,000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4,800	
	쓰레기 제로화 동 경진대회	16,000	
	의류수거함 설치	135,300	
	청소차량(1톤) 교체	25,000	
	예치금	1,006,913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금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인력 인건비	91,711	청 소 행 정 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등	2,5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90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공사·공단경상전출금)	1,757,997	
	청소차량 교체(5톤, 2.5톤)	450,000	
	예치금	6,115,242	
옥외광고발전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0	도 시 안 전 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0,000	
	재난방재 대응사업	5,400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8,000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무주간판 철거 등)	3,000	
	불법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150,00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사업	40,000	
	동 주민센터 LED 전광판 설치 사업	44,00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원	435,000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	24,000	
	예치금	874,237	
도로굴착복기	심의회 책자 제작 및 사무관리비	2,000	도 로 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참석수당	560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0	
	굴착복구 공사비	1,100,000	
	예치금	1,395,310	
식품진흥기	예치금	2,055,713	위 생 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31,040	
	위생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	3,000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 사례비 등	69,600	

기 금 명		주 요 사 업		비 고
식 품 진 흥금	식 기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	800	
		모범음식점영업주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	5,430	
		시설개선자금 유자금 등	450,000	
저 소 득 주 민 정금	저 주 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680	생 활 활 보 장 과
		주택(유상임차) 임차보증금 등	103,200	
		주택 공공요금	1,500	
		주택 개보수 등	100,000	
		주택 및 물품 구매비	1,562,500	
		주거안정자금 지원	10,000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용자	100,000	
예치금	118,477			
공 유 재 산 관 리 금	공 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450	재 무 과
		예치금	40,679,550	

### III 종합 검토 결과

-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자금을 적립하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자체 기금’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이 있음.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행정 여건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기금의 대부분은 조례에 의한 임의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하여 연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사항: 없음**